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한화진 (환경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석면건축자재로부터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소규모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석면조사를 의무화하고 자연발생석면 관리계획 수립 시 석면이 함유된 암석을 채취·판매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 하도록 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역아동센터의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확대 (안 별표1의2 제2호)

- 1) 지역아동센터에 적용되고 있는 연면적 500㎡ 이상의 현행 면적 기준을 확대하여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 대상으로 포함하되, 공포 후 1년부터 시행함

나.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 대한 석면비산·노출 저감조치 강화 (안 제 23조제2호)

- 1) 관리지역에 대한 석면안전 관리계획 수립 시 관리지역에서 석면이 함유된 암석을 채취·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한 관리방안 포함

다. 관리지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대 (안 제25조제1호)

- 1) 관리지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에 ‘지목변경’을 포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관리지역에서 석면이 함유된 암석을 채취·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 방안

제25조제1호 중 “(覆土)”를 “(覆土), 지목변경”으로, “보상”을 “보상 등”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9조”를 “사용용도 변경 등으로 제29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석면건축물의 용도변경 증명자료(사용용도가 변경되어 석면건축물이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48조제8호 중 “지정”을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변경 포함) 현황

별표 1의2 제2호 중 “학교”를 “학교,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로 한다.

별표 3 제1호라목 전단 중 “탈의실, 경의실(更衣室)을 겸한”을 “평상복 탈의실, 작업복 탈의실 등을 포함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사용 중인 별표 1의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로서 건축물의 소유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석면조사가 적합하다고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인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15조 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략) <u><신설></u> 2. (생략)	제23조(관리계획의 내용) ----- ----- ----- -----. 1. (현행과 같음) 2. <u>관리지역에서 석면이 함유된 암석을 채취·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 방안</u>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25조(관리지역 지원의 기준) 환경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석면 제거, 복토(覆土) 및 그에 따른 휴경지(休耕地)의 <u>보상</u> 에 관한 사항 2.·3. (생략)	제25조(관리지역 지원의 기준) ----- ----- ----- ----- -----. 1. -----(覆土), 지목변경 ----- <u>보상</u> 등----- ----- 2.·3. (현행과 같음)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생략)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이 <u>제29조</u> 에 따른 건축물에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용도변경</u> 등으로 제29조 -----

현행	개정안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또는 석면건축자재의 철거 등으로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1. 2. (생략) <u><신설></u> 3. (생략) ③ ~ ⑤ (생략) 제48조(정보망 구축·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	----- -----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u>석면건축물의 용도변경 증명자료(사용용도가 변경되어 석면건축물이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u>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8조(정보망 구축·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 ----- ----- ----- ----- ----- -----

현행	개정안
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 7. (생략) 8.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u>지정</u> 현황 <신설> 9. ~ 11. (생략) 별표 1의 2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u>학교</u> 별표 3 라. 슬레이트를 해체·제거하는 장소에서 인접한 곳에 <u>탈의실</u>, <u>경의실(更衣室)</u>을 <u>겸한</u> 위생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위생시설은 석면 분진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0.3μm 이상의 입자를 99.97퍼센트 이상 포집할 수 있는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등	-----. 1. ~ 7. (현행과 같음) 8. ----- <u>등록</u> ---- 9. <u>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변경 포함) 현황</u> 10. ~ 12. (현행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별표 1의 2 2. ----- ----- ----- ----- ----- <u>학교</u>,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u>지역 아동센터</u> 별표 3 라. ----- -----<u>평상복 탈의실</u>, <u>작업복 탈의실</u> 등을 포함한 ---- ----- ----- ----- -----

현행	개정안
으로 세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